

工業所有權 國際動向과 우리의 対策



陳今燮

<特許廳 審查擔當官>

序 言

世界는 바야흐로 國境과 地域을 超越한 하나의 經濟圈과 生活圈이 되어 가고 있는 이때 이에 따른 工業所有權의 國際化 趨勢는 우리 나라에서 만의 工業所有權制度의 發展만으로서 安逸할수 있는 時代는 지났다고 본다. 물론 先進諸國에 比하여 우리의 이 制度가 未洽한 點이 많지만 開發途上國에서 先進國으로 발돋움하는 우리 나라로서는 이 工業所有權制度만이 落後될수 없고 또한 낙후되어서도 아니된다.

今年에는 이미 74年度에 北傀가 加入한 世界知的所有權機構인 WIPO에의 加入이 不可避한 實情이며 이에 對處하는 意味에서라도 우리의 視野는 저멀리 工業所有權界의 國際動向에 돌려야 할 것이다.

이제는 舊態依然한 우리의 이 제도에 대한 姿勢에서 肅然이 이 땅위에 이 제도를 올바르게 扶植시키고 國際化的 물결에서 앞장서가는 우리의 각오가 必要한 때이다.

우리 다같이 이 제도를 活用하여 先進 英·美·西獨日本等 先進諸國들이 經濟發展의 根幹을 이룬것을 거울삼아 80年代의 經濟富國을 이루하는데 一翼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工業所有權國際動向과 이에 대한 對策을 生覺해봄이 意義가 있다고 하겠다.

1. 國際機構

1. Paris Convention(萬國工業所有權保護聯盟)

1883. 3. 20에 파리에서 創設되어 1977. 1. 1 現在 美, 獨, 日, 佛, 蘇 등 87個國이 加入하고 있다.

本聯盟條約의 3大基本原則은 다음과 같아.

(1) 屬地主義(第3條)

各加盟國은 同聯盟條約에서 定하는範圍안에서 獨自의in 法體制를 갖추도록 하며 各國家의 特許權은 그領域內에서만 効力이 있다.

(2) 內國民待遇(第2條)

工業所有權保護에 관하여 各聯盟國家는 다른 연맹 국가의 國民에 대하여 自國民에 許與하는 것과 同一한 보호를 許與해야 하고 如何한 方法이던지 差別取扱을 받아서는 않된다.

(3) 優先權主張認定(第4條)

연맹 국가들중 한나라에 出願한 最初의 正式의 출원에 根據하여 出願人은 一定期間(6月~12月)內에 다른 연맹 국가에 출원하여 최초에 출원한 것과 동일한 날자에 출원한 것으로 認定을 받은 것이다.

이와같은 기간을 둘으로써 보호받기를 願하는 여러 국가에 同時에 출원할必要가 없고 自由意思로 그 기간내에 서서히 출원할 나라를 決定하고 출원을 위한 節次를 熟知하고 書類를 作成하는 것이다.

또한 本聯盟에의 加入은 모든 국가에開放되어 있으며 WIPO 事務總長에게 加入寄託書를 提出하여 각연맹국에 通報함으로써 가입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언제던지 가입할수 있으나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一般的으로 加盟國은 特許廳을 獨立機構로 하고 모든 資料를 公衆에게 알리기 위하여 中央資料館(閱覽室)을 設置해야 한다.

2. 世界知的所有權機構(WIPO)

Paris Convention 과 Berne Convention(著作權保護에 관한 연맹) 및 이들의 특별協定의 實務를 계속 맡아오던 BIRPI를 承繼하여 1967. 7. 14 Stockholm에서 創設되었다. 1974. 12. 17 UN 第29次總會에서 14番째 UN専門機構(Specialized Agency)가 되었다. 現在 우리나라 는 읍서버資格으로 活動하고 있으나 78年度에는 加入豫定이며 美·英·蘇·日등 77個國이 가입되어 있고 Paris C. 87개국, Berne C. 65개국 등 實際所屬國家는 約 100餘個國인 셈이다.

本機構의 目的 및 職務를 列舉하면 다음과 같다.

(1) 여러 나라 사이의 協力を 통하여 또는 다른 國際團體와 共同으로 世界를 통한 知的所有權保護를 促進한다.

(2) 여러 연맹의 事務的 協力を 도모한다.

(3) 知的所有權分野에 있어서 法技術的援助(legal technical assistance)를 求하는 나라에 협력을 제공한다.

(4) 지적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情報를 蒐集頒布한다 (月刊誌 Industrial Property 發行).

(5) 登錄에 관한 諸般業務를 擔當하여 이에 대한 자료를 반포한다. 또한 WIPO는 다음과 같은 여러機關으로 組織되어 있다.

(1) 總會(General Assembly)

WIPO의 當事國인 동시에 여러 연맹의 會員國으로構成(6條)되며 現在 70개국이다.

(2) 協議會(Conference)

여러 연맹국의 하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單純히 WIPO에만 가입한 회원국 및 總會會員國으로 구성(7條)되며 北傀等 77개국이다.

(3) 調整委員會(Cooperation Committee)

파리연맹과 베른연맹의 執行委員會 會員國으로 구성(8條)되며 39개국이다.

(4) 國際事務局(International Bureau)

WIPO의 純粹한 事務局으로 1名의 事務總長과 3명의 事務次長 및 185명의 職員이 있다(9條). 따라서 國際意匠·國際商標등 國際特許에 대한 모든 寄託節次를 專擔하고 있다.

(5) 常設委員會(Permanent Committee)

會員國中 加入自願國으로 구성(51個國)되며 開發途上國의 權益保護가 主目的이고 7次會議에 筆者が 參席한 일이 있다.

3. 特別協定

많은 特別協定이 있지만 公業소유권과 關係있는 협

정단을 簡單히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1) Madrid協定(國際商標登錄)

• 1891. 4. 14 創設

○ 獨·佛·伊등 24개국 加入

○ 自國에 先出願後 國際商標登錄(20年間)

○ 10. 395件이 등록(76年末 現在)

(2) TRT(商標登錄條約)

○ 1973. 6. 13 창설

○ 直接國際登錄

○ 獨·美·英등 17개국 加入

(3) Nice 協定(國際商標分類)

○ 1951. 6. 15 창설

○ 英·美·蘇·獨등 31개국 加入

○ 商標 34 營業標 8로 分類(20,000 項目)

(4) Hague 協定(國際意匠登錄)

○ 1925. 11. 6 창설

○ 獨·佛·印도네시아 등 15개국 加入

○ 意匠에 관한 國際登錄

(5) Locarno 協定(國際意匠分類)

○ 1968. 10. 8 창설

○ 佛·獨·蘇등 16개국 加入

○ 31主分類 216中分類(7,000項目)

(6) PCT(特許協力條約)

○ 1970. 6. 19 창설(1978發効豫定)

○ 美·英·日·蘇등 45개국 加入

○ 國際特許情報交換 및 技術援助

(7) IPC(國際特許分類)

○ 1971. 3. 24, 창설

○ 獨·스위스·英·美·蘇등 24개국 加入

○ 8分野에 51,530 項目

2 世界工業所有權動向

1. 歐洲特許廳(European Patent Office) 發足

歐洲特許協定(EPC)은 1973. 10. 5 西獨 Munchen 外交官會議에서 採擇되어 39千萬 以上의 歐洲人口의 經濟地域을 國가를超越한 하나의 統一된 特許法을 制定하여 特許權을 보호하자는에 그 목적이 있다.

現在 西獨·英·伊·佛·和· 벤자움·丁抹·에이레·록센부르크와 EEC 9개국이 主軸이 되어 希·瑞典·奧·瑞西·土·유고등 總 23個國이 가입하고 있으며 1978. 6受理業務를 取扱하게 되며 廳舍는 문헨의 西獨特許廳 바로 옆에 建築中에 있다.

每年 出願을 40,000餘件으로 推算하고 500명의 專門化된 審查官을 各 會員國에서 差出(西獨에선 100명)할 것이며 各 出願은 自國의 特허청에 接受하게 되어 있다.

2. 特許協力條約(PCT)發効準備

世界各國에 동일한發明을 출원하고 世界各國特許廳에서 審查해 오던 것을 WIPO의 PCT部에서 一括하여 取扱하게 하는 이른바 國際特許廳을 만들어 78年下半期에 業務開始를 위하여 모든 準備를 서두르고 있다. 출원은 先行技術을 調査報告書와 함께 출원후 18개월 만에 早期公開되며 IPC를 使用分類하고 物質特許와 多項制度를 채택하였다.

또한 科學資料 및 特許資料에 대한 聯盟相互間에 交換協力하여 특히 開發途上國의 工業化促進에 技術援助, 資料提供等도 主業務로 하고 있다.

3. 國際特許分類(IPC)

1971. 3. 24 Strasbourg에서 特許, 實用新案에 대하여統一的 分類體制를 採擇하고 공업소유권분야에 있어서一層 緊密한 國제협력을 확립하고 各國의 法制에 寄與하며 나아가서는 開發途上國의 急增하는 先進技術의 利用을 보다더 容易하게 하기 위하여 創設되었다. 全技術分野를 8개의 Section으로 나누고 Sub-Section, Class, Sub-Class, Main-Group, Sub-Group으로 Invention Unit (Information unit 參照)에 따라 細分하여 51,530分類에 맞추어 분류한다. 世界各國이 앞을 다투어 特許分類는 물론 모든 과학자료를 이 IPC에 따라 분류(INPADOC, ICIREPAT 등)하고 있는 實情이므로 先進國의 特許資料, 技術情報等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果敢히 이 IPC를 채택해야 할 것이다.

4. 特許制度

西獨이 1968年부터 醫藥·飲食物·化學物質에 대하여 物質特許를 許與함과 때를 같이하여 日·蘇·瑞典·丁抹·노르웨이 유고 등 세계 각국이 물질특허를 認定하고 있으며 기술의高度化와複雜化에 따라 分明하고 明確한 特許權을 賦與하기 위하여 多項制度(Multiple Claim)를 채택하고 있고 急增하는 出願件數와 重複開發을 避하기 위한 早期公開制度 역시 西獨, 日本의 뒤를 따라 施行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趨勢는 특허제도가 國際化(PCT,EPC)에 따라 最善의 제도이므로 이에 대한 우리의 철저한 檢討와 導入時期를 研究해야 할 것이다.

5. 北傀의 WIPO加入

우리나라와 北傀가 國際的 地位向上에心血을 기울이고 있는 近間に 1974. 8. 17 北傀가 WIPO에 電擊的으로 加입하였다. 물론 다음表(1)(2)에서와 같이 件數로 보아서 微弱하지만 74년에 比하여 75年度는 출원이伸張했다.

〈表 1〉

(1974年度)

區分	特許	實用 新案	意匠	商標	總計
韓 國	4,455	6,833	6,220	9,300	26,808
北 傕	365	(制度 設 置 音)			365

(1976, 西獨統計公報)

〈表 2〉

(1975年度)

區分	特許出願			特許登録		
	內國人	外國人	計	內國人	外國人	計
韓 國	1,326	1,588	2,914	212	230	442
北 傕	1,159	—	1,159	512	—	512

(1977. 10. WIPO 統計)

6. 企業體의 特許管理 專擔部署

世界에서 電子製品會社로서 IBM, GE, ITT, Philips에 이어 第5位의 賣上額(18.9 bil DM)인 西獨의 Siemens AG는 特許部반 西獨特許廳에 자리잡은 單獨建物을 使用하여 여기에 500명의 엘리트職員이 從事, 專門家만 300명이고 이중 辯護士, 辯理士가 80餘名으로 마치 特許廳을 備蓄케 한다. 모든 特허자료는 INPADOC에서 買入하여 完全히 파일시스템으로 되어 컴퓨터화되어 있다. 新製品開發도 이곳이 主軸이 된 社內特許審議會에서 最終決定한다고 한다. 오늘의 企業은 自國內만 局限된 것이 아니므로 비전을 가지고 世界市場을 무대로 하는 特許專擔部署를 新設 또는 強化하여야 할 것이다.

③ 우리의 對策

1. WIPO 加入準備

특허청에서는 實體의 義務의 制約이나 特許法의 變動의 國際工業所有權機構에 加입하여 國際的地位를 向上하고 法技術의 支援, 特許情報의 蔽集容易, 要員專門化를 위한 人的, 財政의 支援등의 實利가 있는 WIPO 반의 優先加入準備를 오래전부터 서둘러 왔다.

1975. 3. WIPO 第7次 常設委員會(Permanent Committee)에當時 文基祥 特許局長과 筆者가 韓國代表로 參席하고 1976. 9 월자가 WIPO 擔當實務者와 接觸을 가졌고, 1977. 11 安永哲 特許廳次長(當時)을 團長으로 한 調査團이 WIPO를 訪問하였다.

따라서 1978年度에는 우리나라의 WIPO加入이 確實시된다. 우리는 적어도 B級(\$5,192)以上의 分擔金을 내고 땃떳이 加입함이 좋을 것이다.

轉出除外)에는 提案을 採擇할 수 있으나 施賞은 하지 않는다. 다만, 共同提案者가 있을 경우에는 在職者에게 授與할 수 있다.

3. 採擇實施한 結果豫想以外의 顯著한 效果가 나타난 提案에 對하여는 豫審의 建議에 의하여 功勞賞을 授與하고 追加褒賞한다.

第15條 (團體賞) 1年間을 通하여 入賞提案의 年間豫想收入金總額 및 年間入賞提案件數가 顯著히 多大하다고 認定되는 課에 對하여는 會社創立記念日에 表彰狀을 授與하고 課員 全員에게 記念品을 贈呈한다.

第16條 (提案事務取扱要領) 提案事務 主管課는 다음 要領에 따라 提案事務를 處理한다.

1. 提案收領處理

① 提案書蒐集

毎月末 擔當社員은 主管課長(主管課長 不在時는 豫審委員長)立會下에 提案函을 開函蒐集한다.

② 提案書寫本作成

提案書에 開函日付印을 押印한 다음 必要枚數(審查委員數)만큼 寫本을 作成하여 豫備委에 附하고 提案書原本을 嚴重保管한다.

2. 不採擇通報

本 審查委員會에서 不採擇하기로 決定된 것에 對하여서는 1週日 以內에 不採擇 通報書를 作成하여 提案應募 紀念品과 함께 手交한다.

3. 入賞提案의 處理

① 提案者에의 通報

本 審查委員會의 採擇決定에 基하여 社長이 施賞을 裁可한 入賞提案에 對하여서는 入賞通知書를 提案者에게 送付한다.

② 人事擔當課에의 通報

提案件名, 施賞等級, 賞金等을 記載한 入賞者名簿를 作成하여 人事擔當課에 移牒하고 人事記錄카드에 記入하도록 한다.

— 13面에서 계속 —

2. 파리聯盟 등 其他 特別協定加入問題

Paris C는 工業所有權에 관한 多者協定이므로 우리가 加入時 우리의 特許法를 改正해야 하고 共產國家와의 交流를 避할 수 없으며 日本에 對해서는 意匠權相互保護協定을 맺는 結果가 된다.

또한 現재 이 파리연맹에 87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므로 結局 63個國에 對하여 더 工業所有權保護協定을 締結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다(현재 24개국과 협정되어 있음). 따라서 加入시에 國家的實利를 면밀히 검토한 후 加입에 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世界全域을 하나의 特허 block으로 形成시켜 제네바의 WIPO가 世界特許廳役割을 하고 있는 國際

4. 採擇提案處理

① 擔當課에의 實施依賴

主管課는 本 審查委員會가 定하는 바에 따라 擔當課에 提案內容의 施行計劃樹立斗 그 實施를 依賴한다.

② 施行計劃 및 推進狀況報告

施行擔當部署는 採擇提案의 施行依賴通報 接受後 1月以內에 施行計劃을樹立하여 主管部署에 報告하고 同計劃推進後 2年間 2回以上 그 推進狀況斗 效果를 主管課經由 委員會에 報告한다.

③ 事後評價

主管課는 施行後 2年間 年 2回 以上 定期의 으로 採擇提案의 進行狀況斗 그 效果分析을 豫審에 依賴하고 그 結果를 社長에게 報告해야 한다.

第3章 職務發明

第17條 (職務發明申告) ① 從案員의 職務에 關하여 發明했을 경우 該當部署長은 이에 대한 内容을 檢討後 職務發明明細書를 作成 主管部署에 提出하여야 하며 主管部署長은 이를 豫備審查委員會에 回附審議토록 한다. 但, 意匠은 提案으로 看做하고 職務發明으로 處理하지 않는다.

② 回附 받은 豫備審查委員會는 採擇 및 出願與否에 關한 意見書를 作成, 本 審查委員會에 移送한다.

第18條 (特許登錄) 出願公告 및 公衆審查完了된 職務發明은 本社企劃調查室에서 會社名義로 特許權設定의 登錄을 畢한다.

第19條 (登錄褒賞) 特許登錄된 職務發明 考案者에게는 登錄褒賞金((30,000원 限度)을 支給한다.

第20條 (實績褒賞) 審查委員會는 年 1回 出願 또는 登錄된 發明의 施行狀態를 調查 分析한 後, 그 實施結果 顯著한 效果(利益)가 發生되었을 때에는 社長의 承認을 得한 後 年間利益金의 100分의 3以內의 追加褒賞을 한다. (계 속)

特許(PCT), 意匠(Hague), 商標(Madrid, TRT), 分類(IPC, Locarno, Nice)協定에도 加入問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어찌든 本來부터 國際性을 띠고 있는 공업소유권의 國際化趨勢에 따라 어느 때인가는 이 모든 국제협정에 가입해야 할 것이다.

3. 特許制度上의 問題

특허제도에 있어서 物質特許制度, 多項制度, 早期公開制度, 國際特許分類를 世界各國이 大部分 採擇(西獨68年, 日本70年)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이들과 並 맞추어 이 제도들의 導入에 關心을 가지고 注視해야 할 것이다. 먼저 우리 產業發達 및 構造와 業界의 適切한 要望에 따라 充分히 檢討하고 分析하여 오랜 準備期間을 設定함이 必要할 것이다. ■